

춘천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19가단541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박찬성, 박호서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민규

변론 종결2021. 1. 27.

판결 선고2021. 3. 10.

주 문

1. E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E를 상대로 '양수금 53,949,655원 및 그중 11,276,44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61644), 위 지급명령은 2018. 1. 6. 확정되었다.

나. E의 부친 F은 2018. 9. 24.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E, G, 피고 C, D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0. 8.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상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1.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61644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E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이가 있었던 2018. 10. 8. 무렵 E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 2/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525,890원 상당(= 이 사건 협의

당시 공시지가 112,892,400원 × 2/11, 원 미만은 버림)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53,949,655원 및 그중 11,276,440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10. 8.까지 연 41.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E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2) 피고들은 장남인 E가 망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총 57,835,480원 상당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생전 증여를 받았고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 결과가 E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사해의사

피고들은 피고 B가 오랜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고 E는 고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고향을 떠나 생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E의 채무 관계 및 이 사건 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E와 가족 관계인 점,

② 피고 B와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건축된 망인 소유의 미등기주택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고, E도 이혼 후 2002. 10.경부터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와 동거해온 점, ③ E는 2002년경 채무가 많아 이혼을 하였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여 망인으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점, ④ 피고 B는 위 주소지에서 2017. 12. 22. 원고의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61644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2018. 3. 19. 이 법원 2018카명10266 재산명시결정과 2018. 4. 19.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도 각 송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원상회복의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2/33 지분(= E의 2/11 지분 × 피고들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윤이나

별지